

● **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473호**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
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4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상 호 : 롯데카드(주)

2. 허가업무 :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

3. 허 가 일 : 2021. 11. 24.